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0. 9. 17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동 조례의 시행일이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에 대하여 「지방세법」 일부 개정 시점인 2010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부칙 제2조를 제4조로 하고, 안 부칙 “제2조에(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촉탁분부터 적용 한다.”로 하며, 안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제3조와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를 각각 신설하고자 함. (안 부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를 제4조로 하고, 안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촉탁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와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부 칙 <u>제1조(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신 설></p> <p><신 설></p> <p><u>제2조(일반적 경과조치)</u>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p>	<p>부 칙 <u>제1조(시행일)</u>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p> <p><u>제2조(일반적 경과조치)</u> (현행과 같음)</p>	<p>부 칙 <u>제1조(시행일)</u> (개정안과 같음) <u>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u> <u>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u> <u>일 이후 징수축탁분부터 적용한다.</u> <u>제3조(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에 관한</u> <u>적용례) 제3조와 제3조의2 개정규정</u> <u>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u> <u>터 적용한다.</u> <u>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개정안과</u> <u>같음)</u></p>